

제825호

무주 공보

2026. 8. 26.(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무주군 공고 제2026-915호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무주군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치매선별·정밀검사, 조호물품 및 배회감지서비스 등 지원 사업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시행계획 수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기능,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7조)
-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9.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우) 55515
- 전자우편: kwonek1016@korea.kr
- 전화: 063-320-8601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진단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배회감지서비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조호물품”이란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 안전용품 및 편의용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무주군민의 치매를 예방·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무주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둔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등 검진사업
2. 치매정밀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
3.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의 안전·건강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인식표 보급
 - 나. 배회감지서비스 지원
 - 다. 조호물품 지원
4.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치매의 예방·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
3.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치매선별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